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

2025. 12. 3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기업장 및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공고 2025. 12. 31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I.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사업개요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 공단의 기술지도·민간위탁사업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장의 사업주(건설업(40001~9)제외, 건설업 본사(90515)는 가능)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④신속지원 (Quick-pass)
①지정품목(32종)	②관리품목(1종)	③자율신청품목	
상 시	공 모	상 시	상 시
연 중	별도 공고	연 중	연 중

- ①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
- ②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 ③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으로 연중 상시 지원
- ④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및 감독 또는 공단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지원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신청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 ▶ 당해연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 결정 사업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①지정품목(35종)	②관리품목(2종)	③자율신청품목
상 시	공 모	공 모
연 중	4월 또는 5월 중	① 1차 : '26.1.2~3.31.(3개월) ② 2차 : 7월 중(1개월)

※ 공고 일정 및 시행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 ①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연중 상시 지원**
 - 특정 품목 신청과 결정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신청을 중단하고, '27년 이후 관리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 ②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 ③ **자율신청품목** :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20%내외로 운영하고 2차 예산은 추후 결정 예정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②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은 각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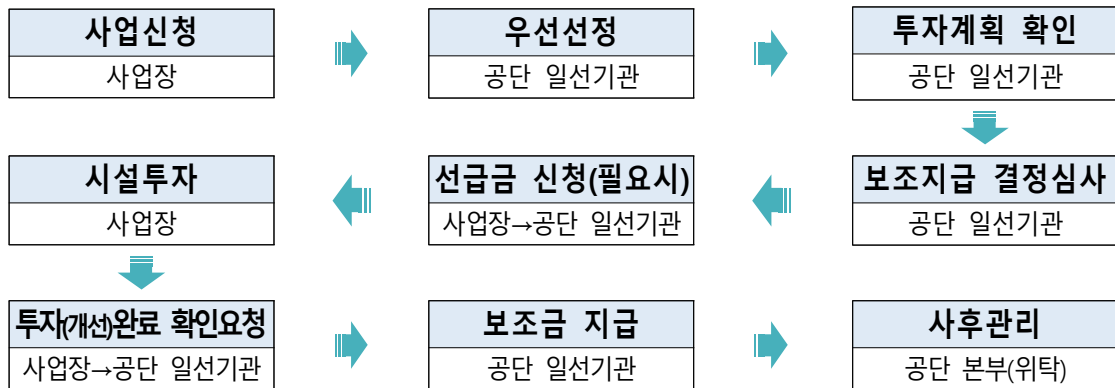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 (지원횟수) 당해연도 2회에 한함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지정·관리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2]

구 분	취급품목
안 전 (30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 고정식 : 관리품목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관리품목
보 건 (7종)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 율	자율신청품목

※ [첨부2]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 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 (지원절차) 일선기관별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3]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370억원
-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 온라인 신청 메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자료실
 -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하고,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 품목별 최소 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구 분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사업장 전경 및 품목별 지원품목 설치대상 작업 증빙사진(투자계획)	(첨부4)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첨부1)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⑩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4)
⑪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⑫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등 투자계획 확인*을 위한 자료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자료 등 ※ 고정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면 등) 반드시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해당시 (첨부4)
⑬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 사본	해당시
⑭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⑮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⑯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등)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⑰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첨부4)

<참고>

- ③은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말하며, 제출 대상 여부는 [첨부 2]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
 - ¹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7], ²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³**거래사실 확인서**[첨부8]를 모두 제출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⑮ 도입계획서, 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 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안전보건공단 보조금이 지원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3)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보조, 용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4)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4)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만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5) 1) ~ 4)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 ※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구 분	비고
①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③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시
⑦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5)
⑧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6)
⑨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⑩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첨부4)
⑪ 품목별「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4)
⑫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첨부4)
⑬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4)
⑭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등)	해당시(첨부4)

<참고>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
-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5 참조)
- ⑧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해당 사업의 신속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금 지원 운영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5] 참고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 (사용성 강화)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 사용방법, A/S 조치사항 등을 구매 사업장이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안내 하여야 하며,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 투자완료 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제출
-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스마트 귀마개 등)의 경우, 효용성 및 편의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지원제외) 안전동행 지원사업(舊 안전투자 혁신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에 설치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69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 일반상담(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 02-3215-2674

[별지 제3호 제식]

● 중소기업 등록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제식)

발급번호 : (0000) - (0000) - (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②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본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⑤

※ 주의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란 중앙정부가 제정 공시제정 대공기업명부를 공시하여 주지 아니 하는 기업에 한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지원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기업에 한한다.
- 발급신청 및 발급주소 등 등록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발급,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 기타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제2호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하거나,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이의제기 하도록 할 수 있음

■ 확인사항

-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 품목별 최소성능기준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 KC전파인증*이 최소성능기준에 있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면제 대상이면 제외
-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2-2.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인공지능형)



- (지원목적) 작업 중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
- (품목설명) 고위험 기계설비에 센서 및 인공지능(AI)와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접근 및 행동에 따라 설비의 전원차단 및 정지하는 시스템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인공지능형)	(신청 시) 고위험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 - 신규 설치인 경우, 해당 고위험 기계설비 구매 계약서 사본 제출(기계설비 자체 구매비용 미지원) ※ 비상정지 및 도어잠금장치(락, 스위치 등) 등 기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따른 방호울이 설치되거나 밀폐형 구조일 것 - 고위험 기계설비가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既검사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 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성	최소 성능기준
카메라	1.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2.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3. KC전파인증서 제출 4.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성확인서 제출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1.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선택사)*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경보 및 조치 * 쓰러짐, 화재 감지 등 - 도어 또는 방호덮개 등이 닫혀 있어 기계가 정상 가동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끼임·부딪힘 등의 위험구역에 들어오는 경우, 고위험 기계설비가 즉시 정지 2.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또는 사무실 설치 3.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 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4.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구성품이 안전인증·검사대상인 경우, 설치기준은 안전 인증·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서 제출 5. 고위험 기계설비 안전에 관한 기능 추가(옵션*) 가능 * 라이트 커튼, 레이저스캐너, 방호울, 안전매트 등 ※ KCs인증 대상은 반드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6. KC전파인증서 제출
감지영역설정	1. 카메라가 감지하는 위험구역 변경 가능
경보장치	1.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경보음) 필수 2. KC전파인증서 제출

16.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 **(지원목적)** 무선통신기술 및 그 밖의 신기술을 적용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원하여 관리자 및 그 외 근로자들에게 알려,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예방 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여
- **(품목설명)** 무선통신(IoT) 또는 그 밖의 신기술을 통해 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밀폐 작업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질식·중독재해를 예방하는 장비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신청 시)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보유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건설업은 본사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18조, 별표 18에 포함되는 장소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제5항 인화성가스, 제6항 인화성액체 취급·저장 설비 보유 사업장에 지원불가 ※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성능기준)** 다음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지원

구 성	최소 성능기준
디바이스 (측정기, 옵션 등)	- 산소, CO, H₂S 등의 농도 및 질식·중독 위험범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것(추가 센서 옵션 가능) - 센서 및 배터리 등 교체 또는 이상 등을 전원 작동시 진단하는 자가 기능이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과 비상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에서 경보음이 울릴 것(디바이스는 경보음 off 불가) - 작업장 소음에서도 위험 경고 등을 청각적으로 바로 인지할 수 있을 것 - 스마트 폰 등과 무선방식으로 연결되고, 방해물로 인한 차폐상황에서도 최소 20m 이상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작동할 것 - 배터리는 충전식인 경우에는 1회 충전시 16시간 이상 작동할 것 ※ 배터리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KC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제출 - KC(전파인증)제품, 디바이스의 설치된 가스센서는 검교정 및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일 것(관련 서류 동봉 및 사본 제출) - 방수방진등급 : IP55이상 - 현황 모니터링, 중계기(증폭기)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품(옵션) 등은 지원가능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 (품목설명) 특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아래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 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자율신청 품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국내 특허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 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참고) “자율신청품목”으로 지원불가 제품 - 수요 과다 등으로 관리품목으로 지정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아래 사유 등으로 인해 안전보건공단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지원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제출 서류 및 신청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원 타당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해예방 목적보다 공정개선에 주목적이 있는 생산설비로 판단되는 경우 예) 용접기, 굴착기, 지게차 등 3) 위험제거·대체 등의 상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4) 기존 제품을 단순 조합하여 구성한 경우 5) 상용화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제품인 경우 6) 지정품목에 해당하지만 지정품목 기준을 충족지 못하는 경우 7) 국가 및 정부기관이 발행한 인증 또는 특허가 아닌 경우 8) 법적 의무 인증 대상에 해당됨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9) 단순부품, 소프트웨어(어플, 프로그램) 단독, 임차 제품, 소모품, 스마트폰 등 10) 그 외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 이상, 최저가격)(단일 품목 기준으로 1천 5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품목명	최소성능기준
자율신청 품목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 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4. 산업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 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KC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취득한 제품 6. 소방용품 시험(인증) 인증 대상 제품 → KFI인증 취득한 제품 7.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유의사항
○ 신청 → 우선선정 → 투자계획확인 이후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결과 “적정” 시 지원가능 ※ 자율신청품목 신청 시 제출한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포함한 자료*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등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신청품목과 동일 모델(동일 구성)의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이상)를 제출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성능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을 위해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 인증/검사 등의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첨부 3

'26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선 정 항 목						항목별 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①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②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대 15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 배점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5~10배수	2~5배수	1~2배수	0.5배수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③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3점		
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저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 활용 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도를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5미만)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3점		
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사근로자수 기준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배점	5점		3점		1점		
⑥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5점	결정 이력 기준 (결정 후 취소된 건 불인정)
⑦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최대 5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80% 미만	60% 미만	40% 미만	2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①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⑩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중소기업(NET)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8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⑪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산업 안전분야 구축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8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⑫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⑬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2점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 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강소기업,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④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 ⑦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⑨산학협력 우수 기업(인증) ⑩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3. 23.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 결정	개 선 대 책	
재료 입고 인력 또는 운반 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운반하는 작업	◦ 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 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 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여 적재 ◦ 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 현상태 유지	
절 단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 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 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 LOTO 실시 ◦ 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용 접 산업용로봇을 사용하여 원자재(철판)을 용접하는 작업	◦ 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이 있음 ◦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 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	◦ LOTO 실시 ◦ 안전보건표지 부착 ◦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배치 - 주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 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 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 현상태 유지	
적 재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 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 작업계획서 작성 ◦ 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 작업계획서 작성 ◦ 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적정 ☒보완	◦ 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 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하여 충돌 위험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	